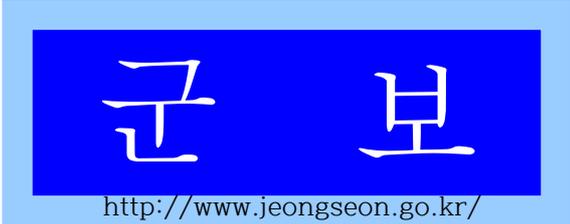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24호 2023. 4. 18. (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944호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1
- 정선군 조례 제2945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4
- 정선군 조례 제2946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9
- 정선군 조례 제2947호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11
- 정선군 조례 제2948호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16
- 정선군 조례 제2949호 정선군 정선이 지원에 관한 조례.....19
- 정선군 조례 제2950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21
- 정선군 조례 제2951호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4
- 정선군 조례 제2952호 정선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46

- 정선군 조례 제2953호 정선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49
- 정선군 조례 제2954호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52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76호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63
- 정선군 규칙 제1377호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69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87회 정선군의회(2023. 3. 29.) 및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4. 7.)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44호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무과장” 을 “위원장”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제4항 중 “7급” 을 “7급 이하” 로 한다.

제6조 중 “별표와 같다” 를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전문위원) ①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u>사무과장</u>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p> <p>② (생략)</p> <p><신설></p>	<p>제4조(전문위원) ① ----- ----- <u>위원장</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u></p>
<p>제5조(정책지원관) ① ~ ③ (생략)</p> <p>④ 정책지원관은 <u>7급</u> 일반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p> <p>⑤ (생략)</p>	<p>제5조(정책지원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7급 이하</u> -----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u>별표와 같다.</u></p>	<p>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 ----- 「<u>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u>」에 따른다.</p>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회 사무기구가 본청 정원에 반영되어(2022.12.23. 일부개정)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에 대한 규정 정비

1) 전문위원의 지휘체계 규정(안 제4조제1항)

- 사무과장 → 위원장 지휘를 받아 사무 처리

2) 전문위원 본연의 업무 규정 외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정책지원관의 직급 수정(안 제5조제4항)

- 7급 → 7급 이하

다. 직원의 정원 규정 사항 수정(안 제6조)

-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라. 별표(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 배정표) 삭제

제287회 정선군의회(2023. 3. 29.) 및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4. 7.)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45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제16조제1항” 을 “제15조제1항” 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을 “영 제7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 을 “5년” 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을 “영 제7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⑦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 또는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렸을 경우

2.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그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p>
<p>제1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p>	<p>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p>
<p>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략)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p>	<p>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제1항----- ----- -----.</p>
<p>제16조(특별휴가) ①·② (생략)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p>	<p>제16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p>

현 행	개 정 안
<p>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④ 의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할 수 없다.</p> <p><신 설></p> <p>1. ~ 3. (생략)</p> <p>⑤·⑥ (생략)</p> <p><신 설></p>	<p>----- <u>영 제7조제1항</u> ----- -----.</p> <p>④ ---- <u>5년</u> ----- ----- ----- ----- ----- <u>영 제7조제2항</u> ----- -----.</p> <p><u>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u></p> <p>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p> <p>⑤·⑥ (현행과 같음)</p> <p><u>⑦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 또는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1. <u>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렸을 경우</u></p> <p>2. <u>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u></p> <p>3. <u>그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u></p>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특별휴가 확대 및 신설로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경력 근거 수정(안 제12조)

1) 연가 가산 경력 근거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으로 수정

2)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삭제

나.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안 제16조제4항제1호)

- 10일간의 유급휴가 신설

다. 포상휴가 또는 격려휴가 신설(안 제16조제7항 신설)

라. 기타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14조)

제287회 정선군의회(2023. 3. 29.) 및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4. 7.)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46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을 “(국내여비의 지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임과 숙박비는” 을 “여비는 영” 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u>운임과 숙박비는</u>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u>국내여비의 지급</u>) ----- ----- <u>여비는 영</u> --- -----.

□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국내 출장 여비 지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내 출장 여비 지급 규정 정비(안 제3조)

- 국내 여비 지급 기준 개정(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나. 별표 1(여비지급 구분표), 별표 2(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 삭제

제287회 정선군의회(2023. 3. 29.) 및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3.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47호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정선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정선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감소 대응 업무의 담당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9조(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결격사유·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정선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사업
3.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지원 사업
4.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5. 귀농귀촌 지원 사업
6. 가족친화·성 평등 사회 환경 조성 사업
7. 인구관련 교육·홍보 사업
8.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11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문화·관광·체육 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2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 제안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제9조)

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안 제10조)

라.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안 제11조)

마. 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안 제12조)

바. 정선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폐지(부칙)

제287회 정선군의회(2023. 3. 29.) 및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3.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48호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정선군 브랜드슬로건

1. 브랜드 마크(Brand 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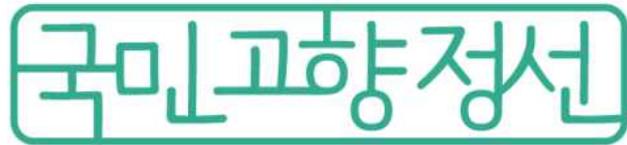
- 아리아리! 정선은 즐거움과 흥, 정선사람의 따뜻함을 의미하는 레드색상을 바탕으로 굽이굽이 흐르는 강과 산세의 자연형상과 흥에 겨운 아리랑 가락을 곡선으로 강조하여 전통과 미래가 조화를 이룬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선을 표현

2. 여행 브랜드 마크(Brand Mark)



- 보고싶다 정선아는 '정선'을 사람의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개발한 정선여행 브랜드 슬로건이다.
보고싶다는 만나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먹어보고 싶다, 느껴보고 싶다 등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3. 관광 브랜드 마크 (국민 고향 정선)



- 국민 고향 정선은 정선의 따듯하고 정이 넘치는 고향 같은 이미지를 ‘정선 = 고향’ 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정선 관광 브랜드 슬로건이다.

정선의 청정자연을 반영한 민트 컬러, 가로획이 길게 이어지는 타이포그래피로 자연과 사람을 잇는 고향 역할을 표현하였다.

□ 제안이유

- 가. 정선의 고향이미지(아리랑, 정겨움, 시골, 어머니)와 웰니스 자원(자연, 숲, 치유, 힐링)을 결합한 디자인 브랜드를 개발하고
- 나. 기존 「보고싶다 정선아」 슬로건과 연계한 마케팅을 통한 정선군의 브랜드 사업을 선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발한 『국민 고향 정선』 관광 브랜드 슬로건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정선군 브랜드 슬로건 『국민 고향 정선』을 별표 5에 추가로 신설

제287회 정선군의회(2023. 3. 29.) 및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3.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정선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49호

정선군 정선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정선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선이”란 성명 중에 “정선”이 포함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선군 정선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정선이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정선이 지원에 필요한 자원 마련에 관한 사항
3. 정선이 지원에 관한 홍보 및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정선이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항) 군수는 정선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선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관광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료의 군민요금 적용
2. 정선군 홍보여행
3. 정선군 소식지 및 향토지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포상) 군수는 지원을 받은 정선이의 활동에 관하여 정선군 홍보·발전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정선이 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정선군만의 고유한 시책추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전국의 ‘정선’이라는 특정 성명을 가진 사람을 지원하여 정선군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선이’ 지원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성명 중에 ‘정선’ 이 포함된 사람

나. 정선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다. 지원사항(안 제4조)

1) 정선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관광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료의 군민요금 적용

2) 정선군 홍보여행

3) 정선군 소식지 및 향토지 제공

라. ‘정선이’ 활동 사항에 대한 포상(안 제5조)

마. 정선이 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제287회 정선군의회(2023. 3. 29.) 및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2. 24.)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50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 재직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제12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p>	<p>제10조(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p>
<p>제12조(특별휴가) ① ~ ④ (생략)</p> <p>⑤ <u>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마다 해당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휴가 사용은 4회 이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u></p>	<p>제12조(특별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해야 하며 소급 및 이월은 불가하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u></p>
<p><신 설></p> <p>1. ~ 3. (생략)</p> <p>⑥·⑦ (생략)</p>	<p>1. <u>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u></p> <p>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p> <p>⑥·⑦ (현행과 같음)</p>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2022년 정선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사항 반영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도모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의 경력 근거 수정(안 제10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의 유사경력 적용에 따른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삭제

나.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 횟수 삭제(안 제12조제5항)

-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삭제

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안 제12조제5항제1호)

- 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 및 재충전 기회제공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10일의 유급휴가 신설

제287회 정선군의회(2023. 3. 29.) 및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3.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51호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제2조(「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개정)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여성청소년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제3조(「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청소년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제4조(「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설과장”을 “안전과장”으로 한다.

제5조(「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7조(「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8조(「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의 개정)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9조(「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경제과장”을 “전략산업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정책과장, 시설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정선군 내수면어업 관리 조례」의 개정) 정선군 내수면어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농업축산과장”을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정선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농업축산과장”을 “유통축산과장”으로 “농업마케팅담당 주사로”를 “관련 업무 담당으로”로 한다.

제14조(「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축산과장”을 “유통축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업마케팅담당 주사가”를 “관련 업무 담당이”로 한다.

제15조(「정선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시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축산과장”을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산사태취약 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과장”을 “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통관리사업소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구성 등)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당연직위원: 부군수, <u>기획실장</u>, 회계과장, 환경과장, <u>문화관광과장</u>, 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p> <p>2. (생략)</p> <p>④ ~ ⑥ (생략)</p>	<p>제6조(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u>기획관</u> ----- <u>관광과장</u>----- -----</p> <p>2.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제2조(「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p>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p> <p>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총무행정관, <u>여성청소년과장</u>, 정선경</p>	<p>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 <u>가족행복과장</u>-----</p>

찰서· 정선교육청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자 2. (생 략) ③·④ (생 략)	----- -----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

제3조(「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구성) ①·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 경제 과장, <u>여성청소년과장</u> 으로 하 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2. (생 략) ④ (생 략)	제31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u>가족행복과장</u> ----- ----- -----. 1.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생 략)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u>건설 과장</u> 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 가단장은 피해지역 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안전과장</u> ----- ----- -----. -----

제8조(「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u>문화관광과</u> 장과 정선군의회의 추천의원 1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문화예술 관계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생략)	제5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문화체육과</u> 장----- ----- ----- -----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u>문화관광과</u> 장으로 한다. ③·④ (생략)	제11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문화체육과</u> 장-----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정선군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략)</p> <p>④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u>경제과장</u>,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장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군의회 의원, 농업관련 단체장, 취급품목 생산자 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⑤ ~ ⑦ (생략)</p>	<p>제5조(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전략산업과장</u>----- ----- ----- ----- ----- ----- ----- ----- ----- -----</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제11조(「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② (생략)</p> <p>③ 당연직 위원은 <u>농업축산과장</u>, <u>농업기술센터소장</u>이 되고, 위촉위원은 농협중앙회정선군지부장,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농업인단체 대표 및 농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p>	<p>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농업정책과장</u>, <u>시설국장</u>----- ----- ----- ----- ----- ----- ----- ----- -----</p>

<p>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한다.</p> <p>④ (생 략)</p> <p>제18조(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p> <p>1. 기금운용관: <u>농업축산과장</u></p> <p>2. (생 략)</p>	<p>-----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8조(회계관계 공무원) ----- ----- ----- -----.</p> <p>1. ----- <u>농업정책과장</u></p> <p>2. (현행과 같음)</p>
---	--

제12조(「정선군 내수면어업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같은 조 제4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p> <p>1. (생 략)</p> <p>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u>농업축산과장</u>으로 한다.</p> <p>3. (생 략)</p>	<p>제3조(구성)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유통축산과장</u>----- --.</p> <p>3. (현행과 같음)</p>

제13조(「정선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구성) ① ~ ④ (생략)</p> <p>⑤ 심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u>농업축산과장</u>으로 하고 서기는 <u>농업마케팅담당 주사</u>로 한다.</p>	<p>제16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u>유통축산과장</u>----- <u>관련 업무 담당으로</u>-----.</p>

제14조(「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설치 및 기능) ① ~ ③ (생략)</p> <p>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u>농업축산과장</u>, <u>농업기술센터소장</u>으로 한다.</p> <p>1. ~ 6. (생략)</p> <p>⑤ (생략)</p> <p>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u>농업마케팅담당 주사</u>가 된다.</p>	<p>제3조(설치 및 기능)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유통축산과장</u>-----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 ----- <u>관련 업무 담당이</u> -----.</p>

제15조(「정선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u>농업기술센터소장</u>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p> <p>③ <u>농업축산과장</u>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1. ~ 5. (생략)</p> <p>④ (생략)</p>	<p>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시설국장</u>----- ----- -----.</p> <p>③ <u>유통축산과장</u>----- -----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제16조(「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u>건설과장</u>으로 한다.</p> <p>③·④ (생략)</p>	<p>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안전과장</u>-----.</p> <p>③·④ (현행과 같음)</p>

제17조(「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p> <p>1. (생략)</p> <p>2. <u>안전과장</u></p> <p>3. ~ 5. (생략)</p>	<p>제3조(구성)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교통관리사업소장</u></p> <p>3. ~ 5. (현행과 같음)</p>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유형	사고 유형	주관부처	주관부서
자연재난	①풍수해	행정안전부	안전과
	②대설·한파	행정안전부	안전과
	③낙뢰	행정안전부	안전과
	④가뭄	행정안전부	안전과
	⑤지진	행정안전부	안전과
	⑥황사	행정안전부	안전과
	⑦폭염	행정안전부	안전과
	⑧산사태	산림청	산림과
사회재난	⑨산불	산림청	산림과
	⑩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환경부	환경과
	⑪대규모 수질오염	환경부	환경과
	⑫댐붕괴	국토교통부	건설과
	⑬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소방청	안전과
	⑭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무행정관
	⑮전력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산업과
	⑯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	고용노동부	전략산업과
	⑰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국토교통부	도시과
	⑱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축산과
	⑲감염병	보건복지부	보건소
	⑳보건의료	보건복지부	보건소
	㉑식용수	환경부 국토교통부	상하수도사업소
	㉒육상화물운송	국토교통부	교통관리사업소

재난유형	사고 유형	주관부처	주관부서
	㉓도로터널	국토교통부	도시과, 건설과
	㉔가스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산업과
	㉕문화재	문화재청	문화체육과
	㉖미세먼지	환경부	환경과
	㉗저수지붕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비상단계

본 부 장	군수	
부 분 부 장	부군수	
통 제 관	재난안전총괄 부서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무반	인 원	총 4+a 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4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 재난상황관리반(4)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2)협업기능반 (a 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 반	· 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 반	· 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행정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 반	· 시설관리부서 - 도시과, 건설과
	마) 재난응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 반	· 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관리사업소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반	· 총무행정관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총무행정관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과, 보건소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군수		
부 본 부 장	부군수		
통 제 관	재난안전총괄 부서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1+ α + β 명	
	반 장	과장급 1명	
1)상황관리 반 (11명)	총괄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 재난상황관리반 직원(4) 재난 총괄부서 직원(2), 재난 수습 주관부서 직원(2)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총괄부서 직원(1) · 주관부서 직원(2)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직원(1) · 주관부서 직원(2)
		라) 행정지원팀	· 총무행정관(1)
2)협업기능반 (α 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행정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 도시과,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관리사업소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행정관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총무행정관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과, 보건소		
재난관리책임기관 (β 명)	·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군수	
부 본 부 장	부군수	
통 제 관	재난안전총괄 부서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5+ α + β 명
	반 장	과장급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15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 재난상황관리반(4)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총괄부서 직원(1) · 주관부서 직원(2)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직원(2) · 주관부서 직원(5)
	라) 행정지원팀	· 총무행정관(1)
2)협업기능반 (α 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행정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 도시과,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관리사업소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행정관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총무행정관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과, 보건소	
재난관리책임기관 (β 명)	·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지진·화산 시 편성기준

가. 비상단계

본 부 장	군수	
부 본 부 장	부군수	
통 제 관	재난안전총괄 부서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무반	인 원	총 4+ a 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4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 재난상황관리반(4)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 습 주관부서 직원 2명
2)협업기능반 (a 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행정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 도시과, 건설과
	마)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관리사업소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 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행정관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총무행정관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과, 보건소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군수	
부 본 부 장	부군수	
통 계 관	재난안전총괄 부서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1+ α + β 명
	반 장	과장급 1명
1)상황관리 반 (11명)	총괄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 재난상황관리반 직원(4) 재난 총괄부서 직원(2),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2)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총괄부서 직원(1) · 주관부서 직원(2)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직원(1) · 주관부서 직원(2)
		라) 행정지원팀 · 총무행정관(1)
2)협업기능반 (α 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행정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 도시과,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관리사업소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행정관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총무행정관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과, 보건소	
재난관리책임기관 (β 명)	·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군수	
부 본 부 장	부군수	
통 제 관	재난안전총괄 부서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5+ α + β 명
	반 장	과장급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15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 재난상황관리반(4)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총괄부서 직원(1) · 주관부서 직원(2)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직원(2) · 주관부서 직원(5)
	라) 행정지원팀	· 총무행정관(1)
2)협업기능반 (α 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행정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 도시과,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관리사업소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행정관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총무행정관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과, 보건소
재난관리책임기관 (β 명)	·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군수	
부분부장	부군수	
통 제 관	재난안전총괄 부서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31+ α + β + γ 명
	반 장	과장급 1명
1)재난상 황 총괄반 (9명)	가) 상황관리총괄팀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1)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2)
	나) 수습상황과약팀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2)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4)
2)협업 기능반 (α 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총무행정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 도시과, 건설과
	마)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기획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교통관리사업소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총무행정관
카) 사회질서 유지반	총무행정관	
타) 수색, 구조·구급반	안전과, 보건소	
재난대응협업반(β 명)	·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 토 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 대대, 한국전력정선지사 등	
현장지원반(γ 명)	· 해당 재난관리 주관부서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 제안이유

민선 8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조직 명칭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023년 2월 조직개편으로 부서(장)명 등 정비

- “여성청소년과(장)” → “가족행복과(장)” 등 조직개편사항 반영

나. 일괄개정조례 목록

연 번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1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기획관실
2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행정국 가족행복과
3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행정국 가족행복과
4	「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국 안전과
5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행정국 안전과
6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설국 문화체육과
7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설국 문화체육과
8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설국 문화체육과
9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설국 문화체육과
10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	시설국 전략산업과
11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설국 농업정책과
12	「정선군 내수면어업 관리 조례」	시설국 유통축산과
13	「정선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 및 지원조례」	시설국 유통축산과
14	「농산물최저가격지원조례」	시설국 유통축산과
15	「정선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설국 유통축산과
16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시설국 산림과
17	「정선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통관리사업소

제287회 정선군의회(2023. 3. 29.) 및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4. 7.)에서 의결된 정선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52호

정선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피해자등의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등의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 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스토킹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톱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선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287회 정선군의회(2023. 3. 29.) 및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4. 7.)에서 의결된 정선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53호

정선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선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방향, 목표
2. 밀원식물의 조성 및 관리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가공시설의 설치 지원사업
2.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및 홍보사업

- 3. 꿀벌 신품종 및 토종벌 산업 육성·보급사업
-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사업
- 5. 밀원식물의 식재·증식 및 보호·관리사업
- 6.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 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정선군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 2. 주된 사업장이 정선군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 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따라 정선군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양봉농가의 육성)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질병·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훈련·컨설팅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가진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체계적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양봉산업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라.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
-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바. 양봉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287회 정선군의회(2023. 3. 29.) 및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3.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54호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징수한다” 를 “징수하며, 납부대상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적용하여” 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를 “군보, 계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을 “개축·재축,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설치” 로, “인허가시” 를 “인허가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3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라. 납부대상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롭게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존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부과한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

1. 존치기간 1년 미만 : 100분의 70 감면
2.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00분의 50 감면

3. 존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0 감면
제2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검사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제1항의 다목, 라목을 따른다.

별표 2,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m³/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4]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오수량 : m³/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 (A)	1차 증축·용도변경				2차 증축·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	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7	18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11	22	11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 주) 1. 신축 후 2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증축·개축 및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 설치 등의 경우는 전체 오수발생량을 합산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 설치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m³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 설치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m³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4. 부과오수량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정하고 3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5.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전부 포함
6.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는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과 건축물 오수발생량을 합산하여 부과(산정 예 : 폐수 7m³, 오수 5m³ 발생 시 12m³ 부과)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총사업비, 생산자 물가상승률(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text{단위단가}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alpha = (1 + R_1) \times \dots \times (1 + R_n)$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의 수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 이하인 경우, 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의 수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 부과계수(β)를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text{단위단가}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times (1 + \beta)$$

▷ $\alpha = (1 + R_1) \times \dots \times (1 + R_n)$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 수질오염 부과계수(β) = $f(C)$

$$= f\left(\frac{\text{연계처리 폐수의 수질}}{\text{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right)$$

- 수질오염 부과계수(β)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유입수질(TOC 또는 BOD)에 대한 연계처리 대상이 되는 폐수(1차 처리수 포함) 수질의 비율(C)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연계처리 폐수의 배출농도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수질오염 부과계수를 산정한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오염물질 부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준값을 정할 수 있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표준값 예시) >

유기물질 농도 비율(C)	1.0 이하	1.0<C≤1.3	1.3<C≤1.7	1.7<C≤2.0	2.0 초과
수질오염 부과계수(β)	0	0.1	0.2	0.3	0.4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유기물질(TOC 또는 BOD)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항목(SS, TN, TP)이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여 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과하는 각 항목별 수질오염 부과계수 중에서 최대값을 적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u>징수한다.</u></p> <p>② ~ ⑤ (생략)</p>	<p>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 ----- ----- ----- <u>징수하며, 납부대상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20조(<u>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u>)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u>령</u>”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u>적용하여</u> 산정한다.</p> <p>2.·3. (생략)</p>	<p>제20조(<u>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u>) ①----- ----- ----- -----.</p> <p>1. ----- ----- ----- ----- ----- <u>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u> ----.</p> <p>2.·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4. 오수발생량 1m³/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u>군보 또는 일간신문</u>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4. ----- ----- ----- ----- -- <u>군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u></p>
<p>5. (생략)</p>	<p>5. (현행과 같음)</p>
<p>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p> <p>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u>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u> 등에 대한 <u>인허가시</u>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p>	<p>6. ----- -----.</p> <p>가. ----- ----- <u>개축·재축,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설치 -----</u> - <u>인허가시 개선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u></p>
<p>나. (생략)</p>	<p>나. (현행과 같음)</p>
<p><신설></p>	<p>다. <u>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3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②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라. 납부대상자는 원인자부담</u> <u>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u> <u>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u> <u>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u> <u>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u> <u>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u> <u>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u> <u>인해 새롭게 배출되거나 증가되</u> <u>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u> <u>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u> <u>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u> <u>다.</u></p> <p>④ <u>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u> <u>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u> <u>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u> <u>할 수 있으며, 존치기간이 5년</u> <u>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부과한</u> <u>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u> <u>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u> <u>추가 부과한다.</u></p> <p><u>1. 존치기간 1년 미만 : 100분의</u> <u>70 감면</u></p> <p><u>2.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u> <u>: 100분의 50 감면</u></p>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생략)</p> <p>④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 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한다.</p>	<p>3. <u>존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0 감면</u></p> <p>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 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검사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 및 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제1항의 다목, 라목을 따른다.</u></p>

제안이유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방안」 등을 반영하여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 발생량 산정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확대 등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방법 추가(안 제16조제1항)

나.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추가

(안 제20조제1항제1호)

다.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법정공고 방법 개선 및 분할납부 방법,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납부방법 개선(안 제20조제1항제4호)

라.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시기 명확화(안 제20조제1항제6호)

마.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 신설(안 제20조제3항, 제4항)

바.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개선(안 제22조제4항)

규 칙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3.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76호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중 “문화관광과”를 각각 “관광과”로 한다.

제2조(「정선군 정보공개규칙」의 개정) 정선군 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로”를 “총무행정관으로”로 한다.

제3조(「정선군기록관 운영규칙」의 개정) 정선군기록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과”를 “총무행정관”으로 한다.

제4조(「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축산과장”을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축산과”를 “유통축산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림정책과”를 “산림과”로 한다.

제5조(「정선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정선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교통관리사업소장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①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 략)</p> <p>3. 캐릭터 : 기획관, 여행캐릭터 : <u>문화관광과</u></p> <p>4. (생 략)</p> <p>5. 정선군 브랜드 슬로건 : 총무 행정관, 여행 브랜드슬로건 : <u>문화관광과</u></p> <p>6. 7. (생 략)</p> <p>② (생 략)</p>	<p>제5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①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u>관광과</u>----</p> <p>4. (현행과 같음)</p> <p>5. ----- ----- <u>관광과</u>----</p> <p>6.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제2조(「정선군 정보공개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보공개의 접수·처리)</p> <p>① (생 략)</p> <p>②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는 <u>자치행정과</u>로 한다.</p> <p>③ ~ ⑤ (생 략)</p>	<p>제3조(정보공개의 접수·처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총</u> <u>무행정관</u>으로-----.</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제3조(「정선군기록관 운영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기록관은 <u>행정과</u>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총무행정관이 된다. ②·③ (생략)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 <u>총무행정관</u>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u>농업축산과장</u> 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2. (생략) ③·④ (생략)	제2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유통축산과장</u> ----- ----- -----. 1·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증상표 사용 심사절차 등) ①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된 서류는 <u>농업축산과</u> (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신청품목 담당부서에 심사실시를 통보한다.	제10조(보증상표 사용 심사절차 등) ① ----- ----- <u>유통축산과</u> ----- ----- -----.

1.·2. (생 략) 3. 임산물 및 임산물가공품 : <u>산</u> <u>림정책과</u> 4. (생 략) ② ~ ④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 <u>산</u> <u>림과</u>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5조(「정선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u>안전과장</u> 3. 삭 제 4. ~ 6.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u>교통관리사업소장</u> 4. ~ 6.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민선 8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조직 명칭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 규칙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023년 2월 조직개편으로 부서(장)명 등 정비

- “문화관광과” → “관광과” 등 조직개편사항 반영

나. 일괄개정규칙 목록

연 번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1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기획관실
2	「정선군 공약실천 관리규칙」	기획관실
3	「정선군 정보공개규칙」	총무행정관실
4	「정선군기록관 운영규칙」	총무행정관실
5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설국 유통축산과
6	「정선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교통관리사업소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3.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77호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 을 “정하는 것”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의한” 을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4년으로” 를 “4년 이내로” 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고지정을 수의방법으로 결정 시 그 적격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한다” 를 “임명하되,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선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⑩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전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p>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p>	<p><u>다른</u> ----- ----- -----.</p>
<p>2.·3. (생략)</p>	<p>2.·3. (현행과 같음)</p>
<p>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특별히 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u>지방자치법</u>」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p>	<p>4. ----- ----- ----- ----- <u>「지방자치법」 제159조</u> ---- ----- -----.</p>
<p>5.·6. (생략)</p>	<p>5.·6. (현행과 같음)</p>
<p>제4조(금고지정) ①·② (생략)</p>	<p>제4조(금고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p>	<p>③ ----- -- <u>4년 이내</u>----- ----- -----.</p>
<p>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략)</p>	<p>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p>	<p>② ----- -----.</p>
<p>1. <u>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금고 지정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u></p>	<p>1. <u>금고지정을 수의방법으로 결정 시 그 적격 여부 심의에 관</u></p>

현 행	개 정 안
<p><u>항</u></p> <p>2. ~ 4. (생 략)</p> <p>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 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u>임명한다.</u></p> <p>1. 2. (생 략)</p> <p>3. <u>지방의원</u></p> <p>④ ~ ⑨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한 사항</u></p> <p>2. ~ 4.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u>임명하</u> <u>되,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과반</u> <u>수가 되도록 한다.</u></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정선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u> <u>의원</u></p> <p>④ ~ ⑨ (현행과 같음)</p> <p>⑩ <u>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u> <u>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u> <u>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u> <u>한다.</u></p> <p><u>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u> <u>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u> <u>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u> <u>서 제척된다.</u></p> <p><u>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u> <u>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u></p>

현 행	개 정 안
	<p><u>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p> <p>2. <u>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p> <p>3. <u>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u></p> <p>4.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u></p> <p>5. <u>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u></p> <p>② <u>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p> <p>③ <u>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전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p>

□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 반영에 따라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과 약정기간이 4년으로 확정되어 있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군 금고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금고의 계약기간을 탄력적으로 변경(안 제3조제3항)

- (기존) 4년/확정 ⇒ (변경) 4년 이내/탄력적으로 조정가능

나.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구성비율을 과반수로 확대(안 제6조제3항)

-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변경

다.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1) 제척사유 기재

- 친·인척 및 이해관계인 등 제척

2)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

3)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